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00

발의연월일: 2020. 10. 13.

발 의 자:정진석·임이자·추경호

홍문표 · 송언석 · 정희용

이종성 · 권명호 · 김정재

김선교 · 김성원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산업과 관련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국가 양도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난방용·농업용·임업용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특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있으나,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임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만큼 현행 특례 적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 제85조의10, 제105조 및 제106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22년"으로 한다.

제85조의10제1항 중 "2020년"을 "2022년"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 및 제6호"를 "제5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6호"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 를 "제9호의3 및 제11호"로, "제8호"를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 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로,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를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면) ①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	
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	
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	
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	
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	
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	
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u>20</u>	<u>20</u>
<u>20년</u>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u> 22년</u>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	

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 3. (생 략)

② ~ ⑧ (생 략)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 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
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00001
<u>2022년</u>
· ② (현행과 같음)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u>8</u>) ①

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1. ~ 6. (생략)
- ② (생략)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 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 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 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 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 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 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 ~ 12. (생 략)

·
제5호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
용하며, 제6호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u> </u>
의3 및 제11호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 1.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